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0. 2. 29.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의안  
번호 266

제안이유

지방자치법('99. 8. 31 개정)과 동법시행령('99. 12. 31 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2000. 1. 8 개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과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조문 배열정리 : 종전 10개조, 부칙, 별표 3 → 7개조, 부칙, 별표 3
  - 종전 제2조(의정활동비지급)+제6조(의정활동비) → 제2조(의정 활동비 지급)
  - 종전 제3조(회의수당지급)+제7조제1항(회의수당지급기준)  
→ 제3조(회기수당)
  - 종전 제7조제2항 제3항(원격지회의출석비) → 제4조(원격지회의 출석비)
  - 종전 제5조(여비의 종류) : 여비지급기준표로 가능함으로 삭제
  - 종전 제4조(여비지급)+제8조(여비지급기준) → 제5조(여비지급기준)

## □ 첨 부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3.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7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①의원의 회기수당은 1일 80,000원으로 한다.

②의원의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 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 ①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함은 충청북도  
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비고

-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미불화)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1등정액	40	186	133	150	180	210
의원	1등정액	35	151	107	140	170	195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를 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3)

## 원격지회의 출석비지급 대상지역

(단위:km)

시·군별	대상지역
충주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염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양성면(77.8), 노은면(69.8), 신나면(63.8)
제천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은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천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성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배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99. 8. 31]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시행일 2000. 1. 1]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4. 3. 16]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 12. 31, 9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 수당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95. 12. 30] [전문개정 95. 7. 1]

[별표 5] <개정 99. 12. 31>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7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550,000원 이내	

[별표 6] <개정 99. 12. 31>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8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70,000원 이내	

## [별표 7] &lt;개정 99. 12. 31&gt;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시 · 도	의장 ·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시 · 군 · 자치구	의장 ·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 비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lt;개정 99. 12. 31&gt;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지 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0	169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20	120	81	130	155	180

-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개정 98. 2. 28. 개정 2000. 1. 8>

## 국외여비정액표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개정전		식비	개정(2000. 1. 8)	
		일비	숙박비		일비	숙박비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가	70	1,511	214	80	1,662
	나	70	881	156	80	969
	다	70	765	117	80	842
	라	70	526	98	80	579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	60	853	201	70	938
	나	60	380	146	70	418
	다	60	305	110	70	336
	라	60	254	91	70	279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	50	320	186	60	352
	나	50	254	136	60	279
	다	50	193	102	60	212
	라	50	135	85	60	149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가	40	240	160	50	264
	나	40	182	117	50	200
	다	40	145	87	50	160
	라	40	120	73	50	132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처장, 통상 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30	169	133	40	186
	나	30	123	99	40	135
	다	30	97	72	40	107
	라	30	83	61	40	9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25	137	107	35	151
	나	25	99	78	35	109
	다	25	76	58	35	84
	라	25	65	49	35	72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가	20	120	81	30	132
	나	20	78	59	30	86
	다	20	58	44	30	64
	라	20	51	37	30	56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가	16	106	67	26	117
	나	16	72	49	26	79
	다	16	53	37	26	58
	라	16	46	30	26	51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 2000. 1. 8(대통령령 제16691호)

적용 : 2000년 1월 1일부터